



신용정보, 금융의 새로운 미래!

한국신용정보원

수 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제2항에 따른 기관

제 목 :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에 대한 금융기관 의견 요청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원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 정비, 금융기관 제재금 한도금액 설정, 지역제재금 금액 조정 등을 반영한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개정 초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중앙회 등은 동 내용을 회원기관에 송부하여 귀 업권의 의견을 수렴·취합해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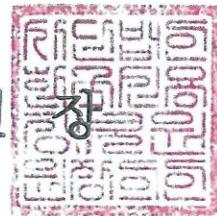
- 의견조회양식 : 붙임참조
- 제출기한 : 2016. 10. 26(수)
- 기타 : 문의사항은 각 업권별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업권별 담당자 >

업권 (1팀)	담당자 전화번호	업권 (2팀)	담당자 전화번호	업권 (3팀)	담당자 전화번호
시중은행 외국은행	박병주 조사역 (02-3705-5919)	증권 · 종금 벤처캐피탈 손해보험	노지혜 선임조사역 (02-3705-5923)	대부업	이병현 조사역 (02-3705-5928)
특수은행 한국장학재단	윤혜진 수석조사역 (02-3705-5918)	생명보험 새마을금고	김유나 조사역 (02-3705-5925)	대부업	이연희 조사역 (02-3705-5914)
지방은행 농협/수협(지역)	곽선근 주무역 (02-3705-5921)	신기술 · 리스 할부금융	신지원 조사역 (02-3705-5926)	신협	신계호 주무역 (02-3705-5930)
상호저축은행	전유영 조사역 (02-3705-5920)	자산운용사 카드사	장민규 조사역 (02-3705-5778)	보증재단 보증보험 기타기관	이유정 조사역 (02-3705-5929)

- 붙임 1.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 주요 내용 1부.
2.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 초안 1부.
3. 의견조회양식 1부. 끝.

한국신용정보원



담당자 조만식 전결 09/22
신용정보관비팀장

신용정보부장 심현섭

[합의]

문서번호 신용정보부-4667 (2016.09.22.)

우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명동1가 1-1) / <http://www.kcredit.or.kr>
전화 02-3705-5571 / 전송 02-3705-5334 / hjyoun@kfb.or.kr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개정안 요약

[시행일 : 2017. ○. ○. 예정]

1. 규약 본문 개정내용

제재금 부과 한도금액의 설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원인 행위별 3천만원 한도 부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 동일 - 금융기관별 1억원 한도

제재금 미납시 조치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경과 시 6% 가산금 부과 - 제재금 미납시 신용정보 이용 제한 또는 감독당국에 통보 가능

2. 규약 <별표>* 개정내용

-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등록·해제·정정·삭제의 집중기한 명확화, 복수 카드정보·미수발생정보 신규 반영 및 기타 자구 수정

1) <별표 1> 「제재금 부과기준」 개정내용

지역 제재금 감액(50%↓)

현 행		개정안	
- 신용거래정보 (복수카드정보, 기업신용거래정보 제외)	30일 이내 : 2만원 90일 이내 : 4만원	- 신용거래정보 (복수카드정보, 기업신용거래정보 제외)	30일 이내 : 1만원 90일 이내 : 2만원
- 신용도판단정보 (미수발생정보 제외)	180일 이내 : 6만원 180일 초과 : 8만원	- 신용도판단정보 (미수발생정보 제외)	180일 이내 : 3만원 180일 초과 : 4만원

※ 아래의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현실화에 따른 금융기관 부담 완화 및 금융 기관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할 필요

기업신용공여정보 지연 제재금 체계 변경

현행		개정안	
- 평일보 등록	1영업일 이내 : 2만원	- 평일여신	1영업일 이내 : 2만원
- 말일보 등록	3영업일 이내 : 4만원	- 기업어음거래정보	1영업일 초과 : 10만원
- 월보 등록	6영업일 이내 : 8만원	- 말일여신	1영업일 이내 : 2만원
-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6영업일 초과 : 10만원	- 월말여신	1영업일 초과 : 50만원

* 집중기한내 집중 여부와 무관

- ※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집중기한으로부터 1영업일 초과하여 집중 및 처리할 경우, 실무 상 별도의 전산 제작업*으로 인해 처리 건수에 따른 부정확 제재금** 이 부과 되었으나 이를 지연 제재금으로 부과하도록 변경
 - * 상기의 경우 통상적인 전산처리가 불가하여 추가적인 전산 처리가 필요
 - ** 일반적으로 1백만원 부과(부정확 건수가 1,000건이 초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별표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개정내용

집중기한내 등록하였으나 오류 통보되어 미처리된 경우

현행	개정안
- 오류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치완료시 제재금 배제	- 오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완료시 제재금 배제

※ 집중일의 익일에 오류 통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착오 해제(삭제 포함) 및 착오 등록의 경우

현행	개정안
-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시 제재금 배제	- 오류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조치완료시 제재금 배제

- ※ 정상적인 등록·해제·정정·삭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집중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서 오처리된 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배제시 과도한 배제조치로 보여질 수 있음
- ※ 동 개정에 따른 영향 추정(전체 금융기관 '15. 4월~6월 제재금 심사결과)
 - 착오 등록 및 삭제 등을 1개월 이내에 조치하여 배제된 건수
: 3개월 총 110건, 월평균 37건
 - 상기 건중 7영업일을 경과한 건수
: 3개월 총 24건, 월평균 8건
 - 과거 자료로 추정한 발생 예상 건수가 많지 않고 시행일이 '17. 7. 1.로 예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며, 지연제재금도 단계 별로 50% 감액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

등록금액이 부정확한 경우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백만원 (기업신용공여 5백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 제재금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백만원 (기업신용공여 1천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 제재금 배제

사유발생일 오류의 경우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오류가 기록 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개월 이내 조치시 제재금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오류가 기록 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7영업일 이내 조치시 제재금 배제

※ 착오 해제(삭제 포함) 및 착오 등록의 경우와 기준 통일

기업신용공여정보의 집중기한 경과 후 등록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여신 · 말일여신 · 월말여신 · 기업 어음거래정보를 집중기한으로부터 1 영업일을 초과하여 등록하였으나 반영 되지 않은 경우 배제

. 끝.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안)

2015.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제재금의 부과) ①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위반한 신용정보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이 있는 경우, <별표 1> 「제재금 부과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는 매월 정기점검이나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규약」 상 이행실태조사(이하 “이행실태조사”라 한다)를 통해 확인한다.

제4조(제재금 부과 배제 등) ① 금융기관이 <별표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에 따라 제재금 부과배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금 납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신용정보의 등록 여부를 위한 판단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관계기관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해당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금 부과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 중 금융질서 문란정보
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나목의 정보

③ 원장은 위반행위 중 “누락, 지연, 고의·부적절”과 “등록 내용의 부정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부정확한 신용정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 제5조(제재금 부과절차)**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제재금 부과 시 해당 금융기관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부과 예정 제재금, 부과배제 신청기한(송달일로부터 30일)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제재금 부과 예정 통보를 한다.
- ② 해당 금융기관은 제1항의 부과배제 신청기한 내에 부과배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과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부과배제 신청기한이 경과하거나, 제2항의 제재금 부과배제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원장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부과 확정 제재금, 제재금 납부기한, 납부방법(어음교환결제 방법, 지로납부 방법 등) 및 최종 부과배제 신청기한(송달일로부터 20일)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제재금 확정부과 통보를 한다.
- ④ 해당 금융기관은 제3항의 최종 부과배제 신청기간 내 서면으로 최종 부과배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이 경과하면 모든 제재금 부과배제 신청절차가 종료 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제재금 부과 한도금액의 설정) ① 원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제재금이 정기점검 또는 이행실태조사로 각각 구분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한다.

1. 해당 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2. 해당 금융기관의 위반행위가 다른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
- ②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다. 다만, 월별 정기점검과 이행실태조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 ③ 원장은 제1항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신용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제재금의 납부 및 가산금)** ① 금융기관은 제5조제3항의 제재금 확정부과 통보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해당 금융기관이 납부기한 내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제재금 미납시 사후조치)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납부기한 내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을 제한
2. 해당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감독당국에 통보

제9조(사무처리) 원장은 각 협회 또는 중앙회 등을 통하여 제재금 부과 관련 사무(회원사에 대한 안내, 부과배제 신청 등)를 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제재금의 회계처리 및 용도) ①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납부한 제재금은 일반신용정보제재금회계로 구분하여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재금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특별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2.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행사 개최
3. 신용정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4. 신용정보 교육, 교재발간 및 포상
5.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확충
6.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구입 및 특별용역비
7. 기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비기간의 운영) 원장은 신용정보의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하여 정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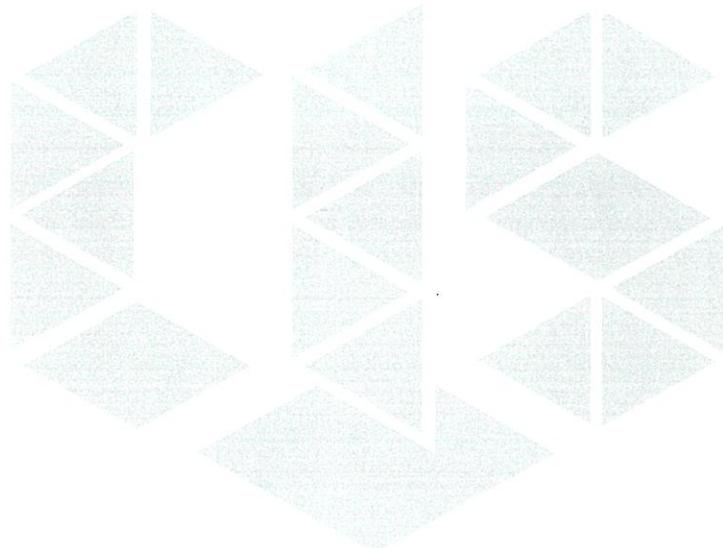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7. ○. ○. 이후 등록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제 재 금 부 과 기 준

1. 신용정보별 등록시기(등록·해제·정정·삭제)

구 분	등록시기
-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 현황 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등록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 이하 같다) 발급 현황 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등록
- 개인대출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등록 . 다만, 제재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하지 않는 경우 부과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등록 . 다만, 제재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하지 않는 경우 부과
- 개인채무보증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등록
- 기업 신용공여정보	◦ 대상기업체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등록
	◦ 평일여신일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등록
	◦ 말일여신일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등록
	◦ 월말여신월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등록
- 복수카드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등록 . 다만, 제재금은 매월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부과
- 신용도판단정보(미수발생정보와 신용거래의 무담보미수채권은 제외)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등록
- 미수발생정보	◦ 등록 : 미수발생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등록. 다만, 제재금은 미수발생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부과
	◦ 삭제 : 미수발생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매매거래일 이내에 삭제 ※ 일수 산정시 접수일이 아닌 신용정보원의 전산처리일을 적용
- 신용능력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2. 지연^{주1)} 기간별 부과기준

대상	지연일수	제재금	사유코드	비고
-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 현황 정보 - 신용카드 발급 현황 정보 - 개인대출정보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 - 개인채무보증정보	30일 이내	1만원	121	발생내역별/ 신용정보주체별 부과
	90일 이내	2만원	122	
	180일 이내	3만원	123	
	180일 초과	4만원	124	
- 복수카드정보	매월 20일부터 2영업일 이내	10만원	151	기준월별 부과
	매월 최종 영업일의 직전 영업일 이내	20만원	152	
- 평일여신 - 기업어음거래정보	1영업일 이내 (집중기한내 집중하지 않은 경우)	2만원	131	기준일별 부과
	1영업일 초과 (집중기한내 집중 여부와 무관)	10만원	132	
- 말일여신 - 월말여신	1영업일 이내 (집중기한내 집중하지 않은 경우)	2만원	141	기준일별 부과
	1영업일 초과 (집중기한내 집중 여부와 무관)	50만원	142	
- 신용도판단정보 (미수발생정보는 제외)	30일 이내	1만원	111	발생내역별 부과
	90일 이내	2만원	112	
	180일 이내	3만원	113	
	180일 초과	4만원	114	
- 미수발생정보		1만원	161	발생내역별 부과

※ 주1) 지연 [대상 및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집중기한 경과]

- 신용정보(대상 및 내용)는 정확하나 등록시기를 경과하여 집중한 경우
- 신용정보를 착오로 등록·해제·정정·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한 후 금융기관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착오에 의한 등록금액·사유발생일의 부정확(등록금액 또는 사유발생일을 부정확하게 집중하여 '해제와 동시에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기록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을 금융기관이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

3. 누락^{주2)} 기간별 부과기준

대상	누락일수/금액	제재금	사유코드	비고
-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 현황 정보 - 신용카드 발급 현황 정보 - 개인대출 정보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 - 개인채무보증 정보	30일 이내	4만원	221	발생내역별/ 신용정보주체별 부과
	90일 이내	6만원	222	
	180일 이내	8만원	223	
	180일 초과	10만원	224	
- 복수카드정보 등록	매월 최종 영업일 이후	30만원	261	기준월별 부과
- 평일여신 - 말일여신 - 월말여신	1억원 이하	2만원	231	기준일/신용정보주체별 부과
	10억원 이하	5만원	232	
	100억원 이하	10만원	233	
	100억원 초과	20만원	234	
- 기업어음거래정보	10억원 이하	2만원	241	기준일/신용정보주체별 부과
	50억원 이하	5만원	242	
	100억원 이하	10만원	243	
	100억원 초과	20만원	244	
- 대상기업체정보	4주 연속	2만원	251	신용정보주체별 부과 월말여신 제외 구간별 기간경과시 해당 제재금을 각각 부과함
	8주 연속	5만원	252	
	12주 연속	20만원	253	
	12주 초과 연속(고의·부적절)	100만원	512	
- 신용도판단정보 (미수발생정보는 제외)	30일 이내	4만원	211	발생내역별 부과
	90일 이내	6만원	212	
	180일 이내	8만원	213	
	180일 초과	10만원	214	
- 미수발생정보	-	2만원	271	발생내역별 부과

※ 주2) 누락[대상 및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 + 집중기한 경과 + 비자발적 처리]

- 신용정보(대상 및 내용)는 정확하나 등록시기 내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용정보원이나** 감독당국 등의 확인 및 안내(제재대상 통보, 이행실태 조사실시 등. 이하 동일)에 따라 집중한 경우
- 신용정보를 **착오로 등록정정·해제·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한 후 금융기관 스스로가 아닌 **신용정보원**이나 감독당국 등의 확인 및 안내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착오에 의한 등록금액·사유발생일의 부정확(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부정확하게 집중하여 '해제와 동시에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기록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을 금융기관 스스로가 아닌 **신용정보원**이나 감독당국 등의 확인 및 안내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신용정보를 착오로 등록정정·해제·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한 후” 및 “**착오로 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부정확(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부정확하게 집중하여 '해제와 동시에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기록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하게 등록한 후” 실제 기록보존기간 만료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

4. 거짓등록 등에 따른 부과기준

(1) 등록내용의 부정학^{주3)}

대상	전수	제재금	사유코드	비고
- 개인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금액의 부정학	-	2만원	411	발생내역별 /신용정보 주체별 부과
- 복수카드정보의 부정학	- 매월 최종 영업일의 직전 영업일 이내	- 20만원	511	기준월별 부과
	- 매월 최종 영업일 이후	- 30만원	512	
- 평일여신, 말일여신, 월말여신, 기업어음거래정보의 부정학	5건 이하	3만원	311	처리일/신용 정보주체별 부과
	10건 이하	5만원	312	
	20건 이하	7만원	313	
	50건 이하	10만원	314	
	100건 이하	20만원	315	
	200건 이하	30만원	316	
	500건 이하	50만원	317	
	1,000건 이하	80만원	318	
	1,000건 초과	100만원	319	
-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 현황 정보, 신용카드 발급 현황 정보, 개인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사유 발생일의 부정학	- 해당 신용정보의 제재금 대상 기간을 산정하여 「지연, 누락 및 고의부적절」에 따른 부과기준 적용			발생내역별 /신용정보 주체별 부과

※ 주3) 등록내용의 부정학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개인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단, 연체정보등중 등록금액의 부정학이 '해제와 동시에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지연, 누락, 고의·부적절로 처리)
- 복수카드정보 및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제외한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의 사유발생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외(지연, 누락, 고의·부적절로 처리)
- 복수카드정보 및 기업신용공여정보는 해당 등록내용이 부정학한 경우

(2) 고의·부적절^{주4)}

대상	제재금	사유코드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 현황 정보, 신용카드 발급 현황 정보, 개인대출 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 개인 채무보증 정보, 복수카드정보, 신용도판단정보의 고의·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부적절하게 해당 신용정보를 지연·누락·등록내용의 부정확으로 처리한 경우 ○ 착오로 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를 누락 하였으나 신용정보원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한 경우 	100만원	511	별생내역별 (복수카드 정보는 기준월별) /신용정보 주체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체정보(대상기업체정보, 평일여신, 말일여신, 월말여신, 기업어음 거래정보) 등록의 고의·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부적절하게 해당 신용정보를 지연·누락·등록내용의 부정확으로 처리한 경우 ○ 대상기업체정보의 신규 등록을 12주를 초과하여 연속 누락하는 경우 ○ “대상기업체정보가 누락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최근 1년 내에 사실과 달리 3회 이상 반복하여 신규 등록·해제 등록한 경우 	100만원	512	기준일/ 신용정보 주체별 부과

※ 주4) 고의·부적절 [고의로 신용정보를 부적절하게 집중]

- 신용정보를 고의로 **부적절하게** 지연, 누락, **등록내용의 부정확으로** 처리한 경우
 - 신용정보(대상 및 내용)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집중하는 경우**. 즉, 신용정보 관련 대상 및 내용을 고의로 **부적절하게** 등록하거나 **정확하게** 등록·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고의로 **부적절하게 해제·정정·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고의로 **부적절하게 집중하는** 경우 포함)
- **착오로** 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를 누락하였으나 **신용정보원**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한 경우
 - 착오로 처리해야 할 신용정보(대상 및 내용)의 등록·해제·정정·삭제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오처리한 신용정보(대상 및 내용)의 정비를 누락하였으나 **신용정보원**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비정규파일 수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등. 이하 동일**)한 경우
 - **대상기업체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원**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체정보 **신규 등록을** 12주를 초과하여 연속 누락하는 경우 및 “대상기업체정보가 누락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사실과 달리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 및 해제**한 경우

<별표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 복수카드정보의 경우 제재금 배제대상 사유코드는 111, 112, 113, 211, 411, 715, 999에 한정
- 기업신용공여정보의 경우 제재금 배제대상 사유코드 811, 812, 814, 815, 861, 862, 864, 865는 적용하지 아니함
- 미수발생정보의 경우 제재금 배제기준 중 “6. 신용정보주체의 파산면책 등”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금융기관의 신규 가입, 파산·청산, 직원의 파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신규 가입	신용정보원에 신규로 가입한 기관인 경우 (영업정지 후 재 개시하는 기관 포함)	- 신규가입일 또는 영업 재개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 신규가입 서류 등	111
파업 등	직원의 파업 및 태업으로 인한 경우	- 쟁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 쟁의신고사실 확인서류 등	112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파산, 해산, 청산	해당 금융기관이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파산, 해산, 청산 등에 해당되는 경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등	113

2.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통신장애 등	신규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 재구축(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인한 전산통합 포함)	- 변경사항 적용일 또는 장애발생일 등(이하 “적용일 등”이라 함)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 시스템 재구축 등 관련 내부공문 등	211
	온라인 전송 시 통신장애로 인하여 정보가 일부만 전송되거나 불완전하게 전송된 경우	- 적용일 등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다만, 미수발생정보의 경우 적용일 등으로부터 7매매거래일 이내 등록 - 해당일자에 신용정보원으로 발송한 전산파일 등	212

※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적용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적용일 등으로부터 최장 1년 이내로 제한) 조치. 단, 복수카드정보 및 기업신용공여정보(기업어음거래정보 포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3. 집중기한 내 등록하였으나 오류 통보되어 미처리된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오류 통보	신용정보를 집중기한 내에 등록하였으나 종합집중기관으로부터 오류 통보되어 미처리된 건을 재등록(기업신용공여정보의 경우 실시간 정정처리로 한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미수발생정보의 경우 미수발생일의 다음매매거래일로부터 2매매거래일 이내에 집중했으나 오류통보되어 3매매거래일에 등록 - 대상기업체정보의 경우 각각의 제재금 부과대상기간(4주, 8주, 12주)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등록 - 오류통보 내역 등 	311

4. 법 및 하위규정,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정보등록 기준 변경	관계법령의 정보등록기준 변경과 관련된 신용정보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 변경사항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 해당 정보등록기준 변경사항 관련 자료 	411

5.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정보 변경 등의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식별정보 변경 및 등록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기 등록정보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재등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등 	511
식별번호 누락	<p>기업에 대한 정보등록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로 일괄 등록 하여야 하나 두 번호 중 하나의 번호로만 등록한 후 미등록번호를 추가 등록하거나 해제시 어느 하나를 누락한 경우</p> <p>- 미수발생정보 및 기업신용공여정보(기업 어음거래정보 포함)는 해당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등 	512
대상기업체 정보 누락 등	임의단체 및 조직변경 법인의 식별정보 오류, 해외현지법인정보 확인 지연, 창업, 상속·증여, 증명서 분실, 채무승계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 	513

6. 신용정보주체의 파산면책 등

가. 파산면책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파산면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면책결정일 이후 연체정보등, 대출 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착오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 -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기 해제된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를 착오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 -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기 해제되어 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기록보존중인 연체정보등이 착오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정보등으로 등록된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단,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연체정보등이 착오등록에 의해 등록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면책결정일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하여 해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면책결정 서류 등 	611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등은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등은 해제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면책결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면책결정 서류 등 	612
	파산면책 취소에 따라 연체정보등 , 대출 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면책취소 서류 등 	613
	기타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서류 등 	614

나. 회생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회생 관련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변제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괄해제된 연체정보등 중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정보등을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변제 계획인가 서류 등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제 계획인가 결정 이후 연체정보등을 착오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 - 변제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기해제되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기록보존중인 연체정보등(대상채권에 포함)이 착오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정보등으로 등록된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단,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연체정보등이 착오 등록에 의해 등록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변제 계획인가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해야 함) 	- 변제 계획인가 서류 등	622
	변제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이행 완료로 면책되어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 등을 면책일로 소급 해지한 경우	- 개인회생면책 서류 등	623
	변제 계획인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등은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등은 해제하지 않아 미해제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인가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변제 계획인가 서류 등	624
	변제 계획인가 폐지로 연체정보등을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 폐지 서류 등	625
	기타 회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서류 등	626

※ 회생절차 회생계획인가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변제** 계획인가에 준하여 상기 내용 적용

다. 신용회복지원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신용회복지원 관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일괄해제된 연체정보등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기관이 아니거나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정보등 을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6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연체정보등을 착오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기해제되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기록보존중인 연체정보등(지원대상채권에 포함)이 착오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정보등으로 등록된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단,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연체정보등이 착오 등록에 의해 등록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확정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해야 함)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632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등은 해제하였으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등은 해제하지 않아 미해제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신용회복지원확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633
	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포함) 지원결정이 실효 되거나 반송되어 연체정보등을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하여 재등록한 경우	- 신용회복 실효 서류 등	634
	기타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서류 등	635

라.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 등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개별기관 워크아웃 등 관련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분할상환금 납입 후 연체정보등을 약정체결일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분할상환 약정 관련 서류 등	641
	분할상환 약정 취소, 개별기관 워크아웃 등 실효자에 대한 연체정보등을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약정 취소일 또는 실효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분할상환 약정 취소 관련 서류 등	642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제되었으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재등록한 경우	- 원장 등 관련 자료	651
등록유예 조치 관련 정보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사유로 일정한 대상자의 연체정보등을 등록유예 하였다가 추후 등록한 경우	- 등록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관련 자료	661
	학자금 대출, 기업구조정협약, 신용위험 평가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령과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따른 등록 유예 대상인 연체정보등을 해제 또는 삭제 (등록취소, 코드 '0077') 하거나 추후 재등록한 경우	- 등록유예조치일 또는 등록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관련 자료	662

7. 금융기관의 채권 양수도 등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채권의 양수	양수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일)로 소급 등록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711
	채권 양수 후 양수취소로 기 등록정보를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 하는 경우 등	- 양수도(취소) 관련 서류	712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 시 후속업무 처리 후 양도일로 소급하여 신용정보를 해제 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713
	채권 양도 후 양도취소로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 관련 서류	714
합병 등	합병 등에 따라 합병 등에 의해 소멸되는 기관의 보유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합병일 등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 합병일 등이 포함된 서류 등	715

8. 기타

가. 기타 업무별 배제사항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착오 해제·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상환을 전액 상환으로 처리하는 등 착오로 해제 등록 후 재등록한 경우 - 업무착오로 삭제 대상이 아닌 정보를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 또는 등록금액·사유발생일 오류(해제와 동시에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후 재등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등록 - 원장 등 	811
착오 등록	착오로 정보 등록 후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삭제. 다만, 미수발생정보는 미수발생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7매매거래일 이내 삭제 - 원장 등. 다만, 미수발생정보의 경우 내부품의서 등 거래소업무 규정상 동결계좌 적용 제외확인 가능 서류 	812
금액 오류 (해제와 동시에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액을 오등록하였으나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이내(기업신용 공여정보 및 기업어음거래정보의 경우 1,0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 -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등의 등록금액을 오등록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등 	813
사유발생일오류 (해제와 동시에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집중한 경우로서 정확한 사유발생일로 정정한 경우. 다만, 미수발생정보는 해당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일 오류가 기록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7영업일 이내 등록 - 원장 등 	814
특수채권 편입	대손상각처리 등으로 해당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면서 연체정보등을 변경(사유코드 변경)하지 않고 특수채권으로 등록한 후 기 등록된 연체정보등 또는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연체정보등을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 - 원장 등 	815
채무부존재 소송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연체정보등을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송달일(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내부품의일. 단, 내부품의일이 최종 판결확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소송 관련 서류 	816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를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거나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정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품의일. 단, 내부품의일이 최종 판결확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소송 관련 서류 	817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확정되어 등록유예 또는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된 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판결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 소송 관련 서류 	818
* 최종판결확정일 : 제1심 및 항소심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 상고심의 경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			

거래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약정 취소 또는 입금 취소를 통해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 등을 해지 또는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하거나 고객이 대출금 최종상환을 취소하여 재등록한 경우 - 고객이 입금 취소 또는 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연체등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원장 등 	819
------	--	--	-----

나. 경미한 사항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분류 코드
경미한 사항	개인대출정보의 또는 채무보증정보의 잔액이 1000원 미만이었다가 추가대출이 발생하여 기존 대출의 등록사유발생일로 등록한 경우	- 원장 등	861
	신규카드의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정보가 구 카드의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정보로 등록된 경우	- 원장 등	862
	개인사업자의 신용공여를 개인대출로 등록하거나 그 개인대출을 신용공여로 등록한 경우	- 원장 등	863
	개인대출정보를 채무보증정보로 등록하거나 채무보증정보를 개인대출정보로 등록한 경우	- 원장 등	864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를 해제 처리하기 않고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 하는 경우(해제와 동시에 기록보존 기간이 경과하는 연체정보등을 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 한 경우도 포함)	- 원장 등	865
	사망자 등 생존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등록· 해제·정정·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 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등	866
	외국법인, 해산·청산법인 등 등록대상이 아닌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등록· 해제·정정·삭제(등록취소, 코드 '0077') 한 경우	- 원장 등	867
	평일여신 · 말일여신 · 월말여신 · 기업어음 거래정보를 집중기한으로부터 1영업일 초과하여 등록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관련 자료	868

다. 기타 사항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등록기한 및 증빙자료	사유코드
기타 사항	상기 배제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한은 상기사항에 준하여 적용 - 관련 서류 등 	999